
『2021/22 국가별 PPP 사업환경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2. 6.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1/22 국가별 PPP 사업환경 조사

2. 계약기간 : 계약일 ~ 6개월

3. 소요예산 : 58,528,370원 (VAT포함)

4. 과업목적

- 세계건설시장 규모 확대 전망 속, 경쟁 구도 심화 및 신규 규제 등 시장 변화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 난항 예상
-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에 사업 정보 및 수주 활동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하여 국가별 PPP 사업환경 조사, 조사자료를 향후 가이드북으로 제작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5. 과업범위

- 국가별 PPP 사업환경 신규 조사 : 2개국(칠레, 터키)
 - (국가 현황 조사) 국가 개황, 경제 현황, 주요 사회개발지표 및 정치·경제·사회·산업 분야 동향 등 전반적 국가 개요 조사
 - (PPP 사업환경 조사) 인프라 여건, 한국 투자현황, 주요 사업 전망, 발주 예상 현황, PPP 제도 및 관련법, 조세 제도, 노동 관련법 등 주요 제도, PPP 진출사례 및 관련 기관 인적 정보 조사
- 국가별 PPP 사업환경 업데이트 : 3개국(방글라데시, 필리핀, 파라과이)
 - 기존 조사 완료 내역(2020 연말 기준)에 대한 정보 최신화 작업
- PPP 진출가이드 한글 번역 : 2개국(케냐, 파라과이)
 -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는 2개국에 대한 진출가이드 한글 번역 및 감수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1. 세부 과업 내용

① PPP 사업환경 신규 조사

- 하기 표제에 맞춘 국가별 PPP 사업환경 조사 : 2개국(칠레, 터키)
 - 작성 양식 : 한글(.hwp) / PDF 변환본 함께 제출
 - 작성 분량 : 총 200페이지 내외, 아래 표 참고

I. 국가 개요(30P)		II. 최신 동향(30P)	
1. 국가 개황	6p	1. 정치 동향	6P
2. 정치, 행정 체계	6p	2. 경제 동향	6P
3. 경제 현황	6p	3. 사회 동향	6P
4. 주요 사회 개발 지표	6p	4. 산업 동향	6P
5. 우리나라와의 관계	6p	5. ESG 관련 동향	6P
III. 사업 여건(50P)		IV. PPP 주요 제도(50P)	
1. 인프라 여건	10p	1. PPP 제도 및 관련법	15p
2. 한국 투자 현황	15p	2. 외국인 투자 환경	15p
3. 주요 PPP 사업 전망	15p	3. 조세 제도	10p
4. 발주 예상 PPP 현황	10p	4. 노동 관련법	10p
V. 진출 사례(20P)		VI. 인적 정보(10P)	
1. 프로젝트별 사업 현황 (EPC, PPP 사업 등)	10p	1. PPP 관련 발주기관 현황	2p
2.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10p	2. 해당 기관별 Key Person	4p
		3. 현지 Developer 현황	4p

※ 국가개요 및 최신동향 파트는 과업수행업체 요청 시 KIND에서 참고자료 일부 제공

② PPP 사업환경 업데이트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환경 조사 내역 최신화
 - 국가 : 3개국(방글라데시, 필리핀, 파라과이)
 - 자료형태 : 상기 표제와 유사 순서로 작성된 .hwp 파일(국가별 200p 내외)
 - 작성시점 : 2020년 연말
 - 최신화 요청 : 2021년 연말(각종 지표) 및 2022년 작성시점(기타 동향) 기준

③ PPP 진출가이드 한글 번역

-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는 진출가이드 한글 번역 : 2개국(파라과이, 케냐)
 - 자료형태 : 상기 표제와 유사 순서로 작성된 .hwp 파일(국가별 200p 내외)
 - 원문 내용과 비교하여 누락되는 내용 없이 번역 및 감수

④ 수행 방법 : 데스크리서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 및 가공, 보유인력을 통한 번역 및 감수

2. 과업수행 일정

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보고 내용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계획(일정)표, 참여 인력 및 조직편성표 등
- 보고 방법 : 착수보고서 서면 제출

②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고 내용 : 과업의 추진상황 및 중간 산출물
- 보고 방법 : 추진상황 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 서면 제출

③ 최종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고 내용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
- 보고 방법 : 최종 진행 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 서면 제출

④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종료일 이전 최종 산출물(6개국 자료) 제출(한글 및 PDF 형태)

⑤ 일정표

항목	-	과업수행 요청 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착수보고	계약 체 결	■					
1. 국가 개요 및 동향 조사		■					
2. 사업 여건 조사			■				
3. PPP 주요 제도 검토				■			
4. 진출 사례 조사					■		
5. 인적정보 정리						■	
6. 성과품 작성							■
7. 보고서 제출			착수	-	중간	-	-
8. 최종 산출물 제출		-	-	-	-	-	제출

- ※ 상기 보고회는 공사 요청 시 사전협의를 통해 대면으로 진행 가능
- ※ 상기 일정 외 수시 보고 및 협의 요청 가능하며, 이에 응해야 함

3. 과업수행 지침

①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수행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고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고,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역서 등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업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

② 과업수행인력의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외사례조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 연구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함
- 공사는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체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음

③ 공동수급 및 도급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공동으로 과업에 참여하는 기관도 모든 과업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해야 함. 해당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의 내용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를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의 도급을 받아 과업에 참여하는 기관도 본 과업수행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기관이 과업수행지침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과업수행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④ 자료 인용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사용하는 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업수행업체의 책임으로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인용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반드시 자료의 타당성, 실효성,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활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또는 최종검사 이후라도 인용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의 수행범위는 공사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협상내역서 등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과업과 관련된 공사의 각종 공문서와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⑥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

- 연구인력의 인원 조정 또는 연구인력 등급 변경시
- 과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과업기간 변경시
- 연구인력의 노임단가 변동시
-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 여건의 변동시

⑦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과업완료시 성과물은 보고서(USB 등 저장매체 활용 가능)의 형태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공사에 귀속됨
- 모든 과업성과물은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⑧ 하자 및 책임소재 등

- 과업수행업체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공사는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사에서 주관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공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로 함

-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9) 보안 대책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10)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치

- 아래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
 -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협상내역서, 기타 계약 관련 서류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규격(내용의 수준)에 미달되게 작성된 경우
 - 보안사항을 유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악용하는 등의 경우
 -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의 지연되거나 공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업체의 부도 또는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